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

거점동물원·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(제22조제1항 관련)

권역	지역 범위
수도권	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중부권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특별자치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
호남권	광주광역시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영남권	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북도, 경상남도